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- 442호

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01호(2015. 7. 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(구 도시환경정비사업)으로 최초 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581호(2020. 12. 24.), 용산구 고시 제2023-9호(2023. 1. 20.)로 구역지정(변경)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합니다.
2. 공람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02-2199-7405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3월 31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3. 3. 31. ~ 2023. 4. 17. (17일 간)

나. 공람장소 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5)

다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
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정비구역 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116호 일대
- 정비구역 면적 : 13,963.1㎡
- 사업시행자 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조합(조합장 : 이우승)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- 건축계획
 - 대지면적 : 9,349.5㎡
 - 건폐율 : (주상복합시설) 46.74%, (사회복지시설) 49.89%

- 용 적 륵 : (주상복합시설) 785.28%, (사회복지시설) 181.94%
- 연 면 적 : (주상복합시설) 151,314.47㎡, (사회복지시설) 564.0㎡
- 층 수 : (주상복합시설)지하7층/지상38층, (사회복지시설)지하3층/지상5층
- 최고높이 : (주상복합시설)119.90m, (사회복지시설)19.07m
- 용 도 : 공동주택, 업무시설,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, 사회복지시설

라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)

바. 기타사항

- 공람서류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,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5) 또는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(☎02-797-9701)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(부서)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